

‘자격검정제도’로 인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통과 무산, 무엇이 문제인가

박신의 | 본지 편집위원, 경희대 교수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통과 무산을 계기로 문화예술계에서 지원법에 대한 관심과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통과가 어렵게 된 요인은 이미 쟁점화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검정제도’와 관련한 조항이었다. 이로 인해 법안의 가치와 근거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과와 쟁점

지난 6월 21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통과가 어렵게 된 요인은 올 봄부터 쟁점화된 바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검정제도’와 관련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문화예술교육의 취지와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힘을 받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예산 확보가 수월치 않을 것이고, 현재 재단법인으로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특수법인 전환이 유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급방 드러날 것이다. 또한 법 통과를 전제로 진행해 온 여러 연구작업도 일단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자격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짐짓 허무하기도 하다.

실제로 6월 20일에 열린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

사소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자료를 보면 많은 부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문화예술교육사’라는 명칭이 ‘문화예술전문인력’으로 수정되면서 배타적 개념의 자격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문인력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한 점이 그렇다. 또 제5장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에서는 자격증제도 도입 유보에 따른 관련 향을 삭제하면서, ‘문화예술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기존의 인력 활용 등을 위해 신규 자격증제도 도입’을 유보하며, ‘자격증 수요조사 등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선행 후 도입 여부’를 재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일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조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명기한 부분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그러나 정작 20일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원 법안은 심사자료의 내용과는 달리 자격증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 속에서, 6월 21일 상임위원회에는 수정된 내용이 아니라 원안대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제도에 대한 문화연대의 강력한 반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의외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문화연대의 의견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부결된 것이다. 물론 몇몇 의원들은 오히려 여러 이유로 인해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자격증이 유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기보다는 법안으로서의 효율성이나 형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자격증 문제가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된 셈인데, 그러나 자칫 법안의 가치와 근거가 바로 이 문제로 인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으로 이해될 것 같아 우려가 된다. 앞서 말했지만 누구라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당위성을 인정하는 만큼, 문제를 너무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논의는 무엇일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번 지원법안 통과 무산을 계기로, 또 다시 문화예술계에서 지원법에 대한 관심과 여론이 형성되리라 본다. 실제로 법안은 지난 해 6월부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를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조성되었다. 이후 2004년 11월의 공청회와 함께, 법안 발의는 12월에 민병두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문화연대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의 관심은 조금 늦게 이루어진 셈인데, 그나마 예술교육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열악한 현실에 대한 천착이거나, '강사풀제'로 모든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묶여지는 듯한 느낌 속에서 지나친 제도화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에 그쳤으며, 실제로 자격증을 둘러싼 정교한 논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자격증, 무엇을 목표하는가

무엇보다도 자격증제도가 무엇을 목표로하느냐에 쟁점이 걸려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규제적 의미인가, 아니면 진정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높은 수준의 향유문화 확보인가, 즉 진흥의 의미인가 하는 문제다. 실제로 문화연대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예술인이 우려하는 바는 자칫 자격증제도가 규제적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문화연대는 6월 21일에 발표한 의견서에서, 문화관광부가 2004년에 개설한 문화예술교육허브사이트인 '아르떼'에서 시행했던 문화예술교육 우수사례를 조사한 결과 교사에서 작가, 청소년단체 종사자, 문화기획자, 예술치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력군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자격검정제도는 대학 등 인력양성기관에 의한 배타적인 인력군을 양성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교육 현장 참여 기회를 봉쇄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예술과 삶의 결합'이라는 실천적 이념에 천착하여 형성된, 사회 전 영역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교육 기획과 실행을 해 온 인력이 자격증제도로 인해 위축되거나 배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해 왔던 기획자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어떤 제도적인 틀을 바라거나 기대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자격증제도가 무엇을 목표로하느냐에 쟁점이 걸려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규제적 의미인가, 아니면 진정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높은 수준의 향유문화 확보인가, 즉 진흥의 의미인가 하는 문제다.

오히려 그들의 예술교육은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 '새로운' 예술의 실천을 피하고자 한 것이고, 또 자격을 규정하는 기준과 모델이 예술 활동을 획일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경계를 두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격증제도란 여러 영역에서 가능하지만, 그 효율성과 표준성이 예술 분야에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적용될지는 의문인 것이다. 예술의 자율성을 고려한다면, '제도화'라는 포장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자격증 제도가 무엇을 필요로 하면서 제기되었나를 생각해 보자. 다시 말하면 문화관광부의 입장으로 '최소한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다. 일단 자격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강사풀제를 살펴보면, 국악이나 연극,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예술가가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위한 최소한의 매뉴얼 정도는 익혀야 하며, 이를 위한 재교육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비롯한다.

또 문화기반시설로 과건되는 전문인력의 경우도 각 문화기반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결국 자격증으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감안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겠다. 자격증이

라는 것이 직업으로써 '정규화'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말이다.

이 같은 맥락을 두고 그나마 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기여할 가능한 자격증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자. 일단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현재 음악 및 미술을 비롯한 여타 교과목 개설의 가능성과 이를 통한 예술교육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해 본다. 물론 음악 및 미술 이외의 예술과목 개설은 교육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러나 그럴 경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은 교육부가 인증하는 정규 '교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부 인증의 자격증제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나 '문화예술교육전문강사', 아니면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과목 수행만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게 된다. 그럼에도 예술교육의 다양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 기대치는 충분히 주어질 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한편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박물관·미술관 교육전문인력의 경우, 기존의 에듀케이터라는 전문직과 관련하여 차후 국공립기관의 경우 채용을 의무화하면서 오는 효과도 기대할 만 하다. 현재 많은 박물관·미술관에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또 이를 전담

할 인력을 보강하는 추세다. 그런 요구에 부응하여 그나마 인력 채용을 추동해 낼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큰 수확이 예상된다. 하지만 자격증을 '문화예술교육사' 혹은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으로 둘 경우 기존 박물관·미술관의 에듀케이터 혹은 '교육학예사' 등의 개념과 분명 마찰을 가지리라 판단된다. 또한 보육원이나 도서관 등의 다른 문화기반시설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여러 문화기반시설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에는 분명 소득이 있으리라 본다. 한국사회에서 자격증제도가 갖는 장점(?)이라는 것이, 늘 그렇지만 제도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자격검정제도의 한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

하지만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현장의 조건은 결코 쉽지 않다. 지원법안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제5장 제28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야별 자격요건, 이수과정, 직무범위, 연구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자격증의 명칭을 어떻게 통일하느냐, 그리고 각 장르별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별개의 명칭을 부여하느냐(일테면 국악문화예술교육사 혹은 국악문화예술전문강사 등으로),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어떤 명칭을 사용하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실제 검정기관을 어떤 기준에서 둘 것이며,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의 양식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물론 이 모두의 문제는 법안이 통과된 후에 충분한

히 연구하면 된다고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검정기관 설정이라는 것이, 실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해 낼 수 있을 만큼의 유연한 성격을 갖는 기관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설령 적합한 기관이 선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화 될 소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 보면 자격증 만능의 의미로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또 검정 내용의 기준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을 개별화시켜낸다 하더라도 기껏 국악이나 연극,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장르로 국한하는 정도일 것이고, 그럴 경우 자칫 낡은 개념의 장르 중심적 예술교육으로 매뉴얼화 될 소지가 많다. 다른 한편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기존의 학예사 시험과 변별점을 갖기 위해 내용상으로 교육과 관련한 시험 내용이 가능하겠지만, 박물관학이 기본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능적 차이 외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진다.

게다가 모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자격증제도로 묶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연계와 사회 연계로 나뉘어 있다. 그중 사회 연계의 경우 문화기반시설에 파견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하고 흥미로운 것은 각종 사회 현장에 직접 찾아가 프로젝트 성격의 문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중대한 의미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고 싶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장 효율성을 갖는다는 점 때문이다.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다. 이 경우 대부분 '아르떼' 공모사업으로 흡수되고 있는데, 예술가이거나 문화기획자들이 기획하여 얼마간의 기간 동안에 준비과정을 거쳐 학교 수업처럼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단기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다. 이런 시도들이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유는 예술 향유의 대중과 공간을 전혀 달리 잡으면서 예술을 새롭게 하는 대안예술로서의 의미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과연 자격증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 같은 경우의 수에 대해 법안에는 별도의 명기가 없다. 그래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강사풀제와 자격증제도가 문화예술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어 버린 점도 부인하기 힘들고,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축소되어 반발을 사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자격증제도가 실시되어 자격증을 소지한 '문화예술교육사' 혹은 '전문강사' 들이 현장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일하게 될지도 문제다. 앞서 말했지만 학교로 들어갈 강사풀제의 인력을 보면, 어쨌든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와의 합의 없이는 정규 교원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늘 강사의 위치에서 강의할 뿐이다.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국공립에서 에듀케이터를 정식 고용하도록 독려한다고 하지만, 그 지위는 박물관 고유의 조직

내에서 주어지는 자리일 뿐이다. 오히려 사립박물관에서라면 고용의 의무 없이 교육프로그램 담당자를 지원해 주는 혜택을 받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자격증을 소지한 박물관·미술관교육사라 하더라도 인턴 정도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자격증이 정작 얼마만큼의 사회적 보장을 약속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현실의 요구는 실제 시간당 4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지방에까지 내려가 프로그램을 실시할 인력이 적다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 또 학교와 문화기반시설의 기존 인력과 교육프로그램 전문인력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현재 강사풀제 운영에 대한 평가와 여러 현실적 어려움에서 비롯하는 원인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통해 서서히 전문인력의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나올지도 모른다. 실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주체를 보면, 그 영역의 다양성과 함께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이고도 자율적인 기획과 시행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생태적 구조를 지닌다는 것이고, 이를 전제한다면 자격증제도는 그 생태적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오히려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단기간에 인력을 양성하여 전국에 파견하는 일이 아니라, 얼마만큼 풍부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실제 체험의 질적 수위를 높이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을 증명해 내느냐에 있다고 본다.

자격검정제도 유보한 지원법안의 통과를 바란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경우 자질이 없는 인력들이 시간당 4만원의 보수를 위해 마구 덩벼든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자격검정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역의 그만큼 어려운 현실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맥락이지, 자격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논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지역에서라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주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느냐의 문제도 중대한 사안이다. 관계자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람객 동원이 거의 안 된다거나, 행정적인 지연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저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아무리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어려움을 막아낼 수는 없는 일이다.

어쨌든 남은 문제는 과연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자격증만이 대안인가로 모아진다. 문화연대는 6월 21일 제출된 의견서에서 자격검정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제도' 및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것은 곧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지향하는 목적인, 학교교육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실시와 사회에서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향유 기회 확대 및 이로 인한 사회 전반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학교예술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라면 자격증 소지자를 학교로 들여오기보다는, 기존 문화예술교육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예술을 전망하는 교안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등의 재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과 미술 이외의 예술과목이 정규과목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도 시설 운영자의 인식을 바꾸는 재교육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제도의 구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보완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나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문광위 위원 간에 자격증 문제를 3~4년간 유예하자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필자로서는 유예이건, 관련 항 삭제이건 일단 자격검정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9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어 무사히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중대한 의미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고 싶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장 효율성을 갖는다는

문화예술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술가라 할지라도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믿는 행동주의 예술가여야 할 것이고, 또 다양한 문화기획자들의 입장에서라면 문화사회, 문화국가를 이루기 위한 매개활동으로서 문화행동의 양식을 높여갈 수 있는 인사라야 가능할 것이다.

점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창작과 향유의 전 과정에서 극장이나 미술관 등의 제도적 틀을 벗어나 학교와 기반시설, 사회 현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술의 새로운 힘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화예술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술가라 할지라도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믿는 행동주의 예술가여야 할 것이고, 학교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예술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치유를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경

우일 것이며, 또 다양한 문화기획자들의 입장에서라면 문화사회, 문화국가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매개활동으로서 기존의 문화행동의 양식을 한층 높여갈 수 있는 인사라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인력들이 시간당 4만원의 보수를 받는, 그나마 이들을 요청하는 학교나 기반시설이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일용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식의 제도적 보완과 구축이 필요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자는 말을 남기고 싶다. 🌈